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민원여권과-17893
등록일자	2015.6.26.
결재일자	2015.6.2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가족관계등록팀장	민원여권과장	행정국장	부구청장 직위대리	구청장
정찬심	인현숙	代노채훈	代박철수	주윤중	06/26 신연희
협조자	세무2과장 세무관리과장 인사팀장	김광수 신오식 정찬식	부동산정보과장 자동차민원과장	김영길 이명옥	

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추진 계획



2015. 6. 25.

강 남 구
(민원여권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(2015. 6. 10) -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※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(맨 뒷장) 첨부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행정자치부 행정제도 혁신업무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해당없음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강남주민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<input type="radio"/>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) ⑤ 시장조사 ----- ()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)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- 서울시 24개 자치구 전면 시행예정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없음

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추진 계획

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선행 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사망신고와 동시접수 통합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별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(2015. 6. 10)
 -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
-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-1700(2015.6.8),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18950(2015.6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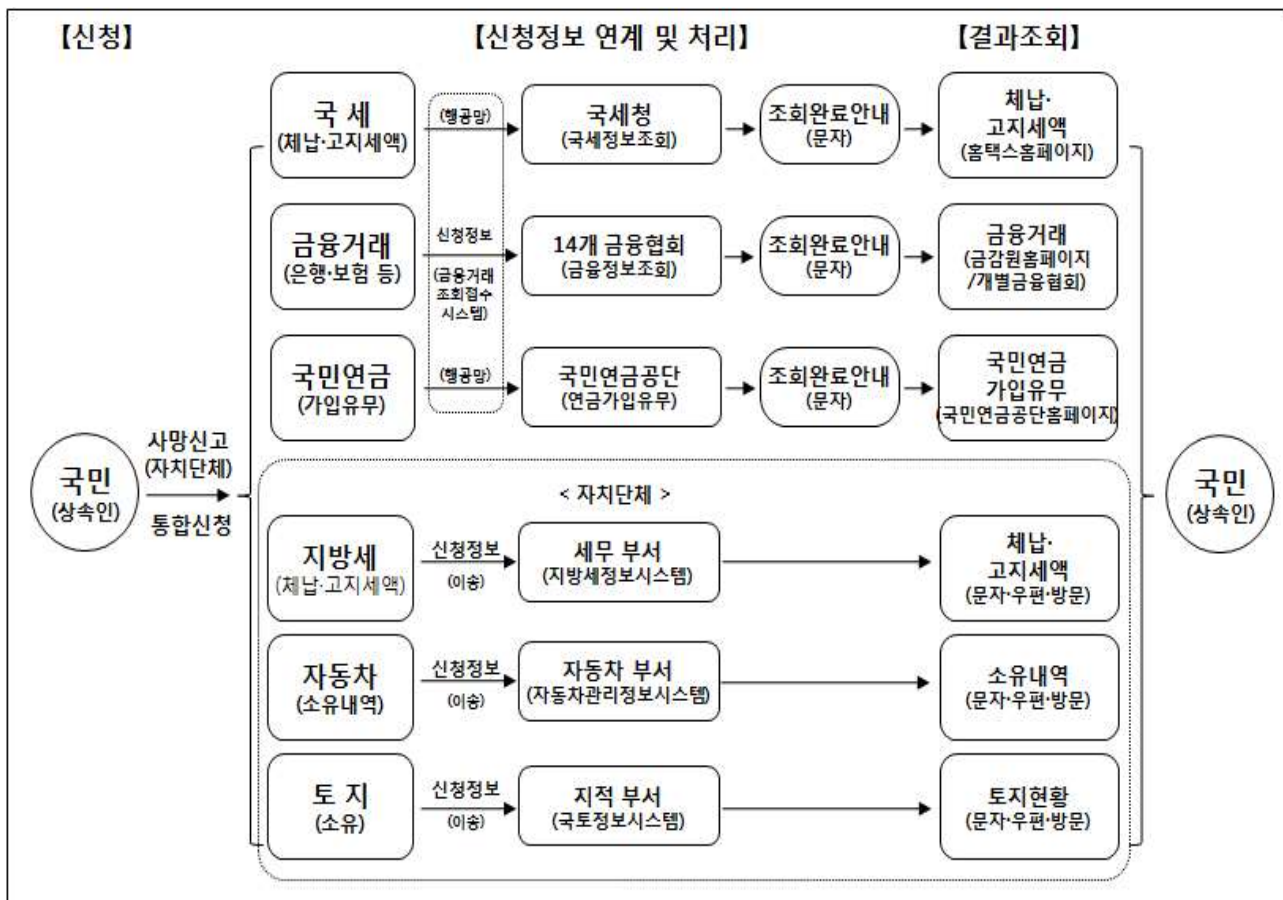
II 추진 개요

- 추진내용 : 사망신고에 따른 재산조회(6종) 통합처리 원스톱 서비스
 - ※ 통합처리 재산조회대상 (6종)
 - ① 지방세정보(체납액· 고지액) ② 자동차정보(소유내역) ③ 토지정보(소유현황)
 - ④ 국세정보(체납액· 고지액) ⑤ 금융거래정보(은행· 보험등) ⑥ 국민연금정보(가입유무)
- 대 상 :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남구인 자
- 시 행 일 : 2015. 6. 30. (시행 예정)
- 접 수 처 :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
- 제 공 처 : 신청인에게 각 해당 기관이 제공
- 신청자격 : 민법제1000조 및 제1003조 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’ 제15조
 - 제1순위 상속인 : 사망자의 직계비속, 배우자
 - 제2순위 상속인 : 사망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

■ 신청방법

-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구(동)에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처리 완료된 이후 “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” 신청서 제출
- 사망 신고시 신청하지 않은 자도 추후에 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한정하여 신청가능
-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취소·변경은 접수한 다음날 당초 신청서를 접수한 구(동)의 ‘접수처’에 업무종료 시까지 접수

【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체계도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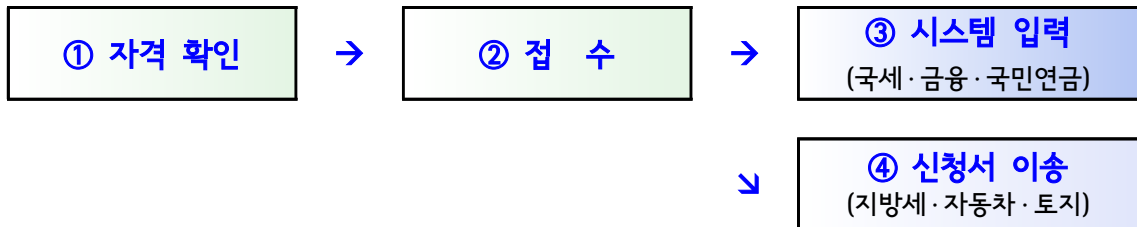


※ 지방세(체납, 고지세액) 조회의 경우 : 동접수분은 해당 동 제증명 담당이 ‘지방세정보시스템’을 통해 조회통보, 구청 접수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총괄 조회통보

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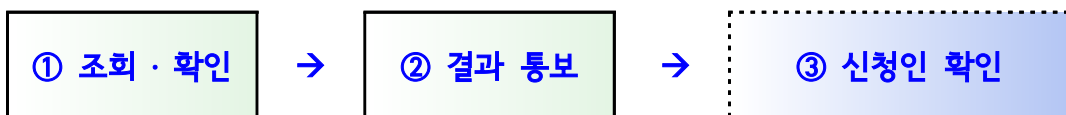
세부 추진사항

1. 접수 : 사망자 주민등록지 구·동 주민센터(사망신고 접수 담당자)



- ① 신분증 및 상속자격 확인
 - ② 인적정보, 휴대폰 번호 등 확인 후 접수 : 신청서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란에 서명
 - ③ 상속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(금융정보교환망 <http://fines.fss.or.kr>)에 접속 : 신청인, 사망자 등 정보 입력 후 접수증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
 - ④ 신청서 사본을 관련부서로 각각 이송 : 관련부서 담당자의 수신여부 확인
 - 지방세(체납액, 고지액) : 세무관리과(구청 접수), 제증명 담당(동 접수)
 - 자동차(소유내역) : 자동차민원과(구, 동 접수)
 - 토 지(소유현황) : 부동산정보과(구, 동 접수)
- ※ 정규 근무시간외에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 운영 불안정 및 관련부서 이송 등의 사유로 민원실 연장근무 시간 제외

2. 정보조회 및 결과통보 : 관련부서 담당자



- ① 각 기관(부서)에서 조회 처리
 - 국세 · 금융 · 연금정보 : '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'을 통해 요청받은 사항처리 → 신청인에게 조회 완료 안내문자 발송 → 신청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

- 지방세 · 자동차 · 토지정보 : 접수처로부터 이송받은(fax,이메일 전송 또는 사본이송) 신청내용을 각 담당자가 각각 조회 처리
 - 제증명담당(동), 세무관리과(구) : ‘**세무종합정보시스템**’을 통해 사망자의 체납세액, 고지세액 조회
 - 자동차민원과 : ‘**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**’을 통해 사망자의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
 - 부동산정보과 : ‘**국토정보시스템**’을 통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조회
- ② 기관별로 조회정보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, 문자발송 또는 통지방법에 따라 결과 통보
 - 국세 · 금융 · 연금정보 : 관련부서의 완료 안내문자에 따라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결과 확인
 - 지방세 · 자동차 · 토지정보 : 업무처리 담당자가 조회결과를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
- ③ 국세·금융·국민연금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, 지방세·자동차·토지는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

■ 서울시 타구 시행여부 조사(2015. 6. 23) :
24개 자치구 ‘통합처리 재산조회대상(6종)’ 전면 시행 예정

■ 우리 구 사망신고 월 접수 건수(2015. 5월)

총건수	강남구 거주 사망자 건수	구청		동주민센터	비고
		강남구	타지역		
164건	127건	13건	37건	114건 (동별 월평균 5.2건)	

※ 5월 강남구 거주 사망신고 건수는 총127건으로 동주민센터 114건 (동별 월평균 5.2건, 1일평균 0.27건)이며, 구청 13건(1일평균 0.68건)임

IV 향후 일정

- 2015. 6.29 :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(금융정보교환망)의 사용자 계정 부여 (구청 및 22개동 주민센터 - 금융감독원에서 일괄생성 예정)
- 2015. 6.30 : 동주민센터 사망신고 접수 담당자 및 처리부서 담당자 교육

V 기대 효과

-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 조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 해소
- 주민을 위한 융합업무 추진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

VI 행정 사항

- 공보실 : 강남구청뉴스 및 지역신문,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
- 세무관리과, 자동차민원과, 부동산정보과 : 접수처로부터 이송받은 신청 내용 조회 처리 및 직접 통보
- 총무과 : 분기별 업무관련 우수공무원 표창상신
- 민원여권과(가족관계등록팀) · 동 주민센터
 - 통합처리신청서(별지제1호 서식) 및 안내문(행자부 별도제공 예정) 비치
 - 시스템 입력 및 신청서 사본 이송, 신청서류 · 접수대장(별지 제3호서식) 등 사후 관리 철저
 - 동주민센터의 경우 지방세 조회 접수시 제증명 담당이 시스템에서 조회 후 직접통보

- 붙임 1.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에 관한 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)
2.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매뉴얼 1부
3. 관련공문 각 1부. 끝.